【 주간이슈 】

미국의 재보험규제 변화와 시사점

송윤아 연구위원
□ 미국의 재보험규제는 주(州)간 규제차이로 인한 비효율, 담보력 감소, 재보험요율 증가 보호무역주의 등의 이슈로 대내외적으로 지속적인 논쟁의 대상임.
o 플로리다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는 해외재보험회사로 하여금 수재위험의 100%에 해당하는 E 보를 설정한 경우에만 재보험준비금을 자산으로 계상 또는 부채에서 공제하는 혜택을 부 여함.
- 플로리다는 해당 주 소재 보험회사가 해외재보험회사에 출재할 경우 동 재보험회사의 신용 등급에 따라 담보설정비율을 차등부과 함.
o 이러한 100% 담보설정규제의 본래 목적은 타국 감독기관의 감독을 받는 재보험회사의 지급 ^최 임 이행능력을 제고하여 재보험금을 완벽하게 회수함으로써 미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는 데 있음.
o 그러나 동 규제는 담보력과 재보험요율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건전성 제고를 빙자한 시장제한적 조치라는 비판을 받아왔음.
□ 이에 미국은 재보험 인정 및 담보 설정에 대한 규제에 대해 건전성 제고라는 본래의 목적을 살리되 차별적 시장진입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전개하고 있음.
o 지난 7월 '단일 적격 주감독당국(single-state regulation)'에 의한 통제를 명시한 재보험개혁법 (도드-프랭크법에 포함)이 통과되어 주간 규제차이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됨. o 또한 해외재보험회사에 적용된 100% 담보설정규제에 대해서는 플로리다처럼 해외재보험호 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담보설정비율을 차등화 하는 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음.
□ 미국의 재보험규제 개혁 및 논의의 전개방향은 우리에게 재보험회사의 지급책임 이행능력 및 재보험금 회수 제고를 유도하는 재보험규제가 필요하며 이러한 규제는 건전성감독 목적에 충실하되 해외재보험회사에 대한 차별적 시장진입 제한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함.
┃ ┃ o 우리나라의 경우 재보험자유화 정책에 따라 1997년 해외재보험회사에 대한 진입장벽을 제기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하였으며 이후 재보험에 대한 감독사각지대 발생으로 각종 재보험사고에 노출되었음.

o 재보험회사의 시장진입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책임준비금이 100%면제되는 재보험회사의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하거나, 신용등급별로 책임준비금을 조건부로 100% 면제

1. 서론

- □ 재보험산업은 지구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보험의 인정이나 담보설정 등에 대한 규제가 감독당국별로 상이하여 국경 간 원활한 재보험거래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 특히 미국의 재보험규제는 주(州)간 규제차이로 인한 비효율, 담보력 감소, 재보험요율 증가, 보호무역주의 등의 이슈로 대내외적으로 지속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에 미국은 재보험인정, 담보설정 등 재보험규제에 대한 개혁을 진행 중에 있음.
 - o 2010년 7월 '단일 적격 주감독당국(single-state regulation)'에 의한 통제를 명시한 재보험개혁법(도드-프랭크법에 포함)이 통과됨으로써 주간 규제차이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함.
 - o 또한 해외재보험회사에 적용된 담보설정규제에 대해서는 건전성 제고라는 본래의 목적을 살리되 차별적 시장진입제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혁하는 과정에 있음.
- □ 이에 본고에서는 미국의 재보험규제와 현재 논의 중인 개선안을 검토하고 특히 미국 담 보규제를 둘러싼 쟁점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미국의 재보험규제

가. 현행규제

<미국보험감독자협의회의 재보험인정모델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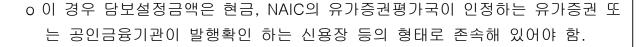
- □ 미국의 일반 재보험거래에 대한 규제는 회계제도(재보험크레디트)를 이용한 출재 사와 수재사의 동시규제로 요약됨.
 - o 재보험크레디트란 재보험준비금을 자산으로 계상 또는 부채에서 공제하는 것을 의미하며, 출재사는 이로써 담보력을 제고할 수 있음.
 - 수재는 (재)보험회사가 타 보험회사로부터 계약의 일부를 인수하는 것을 의미 하며 출재는 계약의 일부를 타 보험회사에게 전가하는 것을 의미함.
 - o 출재사가 재무제표상 재보험크레디트를 받으려면 수재사가 지급책임의 이행능력이 있는 자임을 입증해야 함¹⁾.



- □ 미국 대부분의 주는 미국보험감독자협의회의 재보험인정모델법에 기초하여 수재 사의 지급책임이행능력 등에 관한 요건과 절차사항을 입법화해서 시행하고 있음.
 - o 미국보험감독자협의회(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 이하 NAIC라 칭함)의 재보험인정모델법(Credit for Reinsurance Model Act, 이하 CFRMA라 칭함)은 미국 대부분 주에서 원안대로 또는 원안에 수정을 가한 채 입법화됨.
 - o 동 모델법은 1997년에 제정된 이래 그간 재보험시장의 위축을 초래하지 않은 채 어떻게 하면 재보험금 회수를 확실히 할 수 있겠는가에 주안점을 두고 수차례 개정되었음.
- □ NAIC CFRMA 제2조에 따르면 주감독당국은 해당 주 소재 보험회사가 다음의 재보험회사에게 출재할 경우 동 거래를 재보험으로 인정함.
 - o 자주 소재 재보험자로서 자주에서 재보험자의 허가를 받은 자
 - o 타주(他州) 소재 재보험자로서 자주에서 재보험자로 인정받은 자
 - 이 경우 출재사 소재주 감독당국이 심리 후 재보험자 인정을 취소하면 해당 재보험자와의 거래는 재보험으로 인정되지 않음.
 - o 자주의 재보험인정기준과 상당히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주에 소재하며 소재주에서 재보험자의 허가를 취득한 자
 - 이 경우 해당 재보험회사는 미화 2,000만 달러 이상의 보험계약자 잉여금을 보유하고 있고 장부 및 서류에 대해 출재사 소재주 감독당국의 검사를 받을 것임을 확약해야 함.
 - o 미국 금융기관에 신탁기금을 예탁하고 있는 자
 - 수탁자로서 자격이 있는 미국금융기관에 신탁기금을 예탁하고 있는 자에게 출재하는 경우 보험감독관이 신탁기금의 충분성을 결정할 수 있도록 수재사는 매년 면허소지 미국 소재 보험회사가 감독당국에 보고하는 정도의 정보를 당해 감독당국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재사는 장부 및 서류에 대해 감독당국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 또한 보험회사가 CFRMA 제2조에 포함되지 않은 해외재보험회사(미국내 미등록재보험회사)에 출재할 경우 출재사 소재주 감독당국은 해외재보험회사가 수재위험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담보를 설정하여야만 동 거래를 재보험으로 인정함(CFRMA 제3조).

¹⁾ 이하 본고에서는 '재보험크레디트 부여'를 '재보험 인정'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함.





- □ 주(州)간 규제 차이는 미국 재보험산업의 비효율을 초래하였으며, 담보규제는 해외재보 험회사의 미국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였음.
 - o 재보험인정법은 주마다 약간씩 달라 대내외의 출재사와 수재사로부터 비판을 받아왔으며 담보규제의 완화 및 철폐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았음.
 - o 이에 플로리다주는 2008년에 재보험인정법을 개정하였고 뉴욕주, 뉴저지주 등도 재보험인정법의 개정을 고려하고 있음²⁾.

<플로리다주 재보험인정법>

- □ 플로리다주는 2008년 9월 16일 재보험인정법을 개정하여 해외재보험회사의 신용등급별로 담보설정비율을 차등적용하기로 함으로써 수재위험의 100%에 해당하는 담보를 설정하지 않은 해외재보험회사와의 거래에 대해서도 재보험으로 인정하기로 함.
 - o 플로리다주에서 영업 중인 해외재보험회사는 담보설정비율 차등적용 신청서를 플로리다 보험규제사무소(Florida Office of Insurance Regulation, 이하 FLOIR라 칭함)에 접수하고 FLOIR은 해외재보험회사의 신청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동 재보험회사의 입 담보설정비율을 결정함.
 - o 해외재보험회사가 100%미만의 담보설정을 위해서는 10억 달러 이상의 잉여금을 보유하고, 적어도 두 개 이상의 주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secure financial strength)이상의 등급을 받아야 함.
 - 동 법에 의해 2010년 독일 소재 하노버재보험회사(Hanonover Reinsurance Co. and XL Re Ltd.)는 수재위험의 20%에 대해서만 담보를 설정함.
 - o 담보설정비율 결정시 플로리다에서 영업중인 해외재보험회사 소재국의 규제체계는 고 려하지 않음.
- □ 이와 같은 담보설정비율의 차등적용 규정은 플로리다주 소재 손해보험회사가 자주(自州)에서 인수한 위험을 해외재보험회사에 출재할 경우에만 적용되며 치외법권을 인정하지 않음.

²⁾ Albert et al. "Hot Issues in Insurance Regulation" September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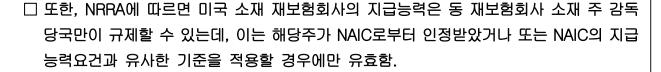


- o 이는 해외재보험회사와 재보험거래를 실행하는 플로리다주 소재 손해보험회사에만 적용되며, 타주 소재 손해보험회사가 플로리다에서 인수한 보험위험을 해외재보험회사에게 출재할 경우 재보험으로 인정되지 않음.
- o 또한 플로리다 소재 보험회사가 타주에서 인수한 위험을 해외재보험회사에 출재할 경 우에는 플로리다 주법이 적용되지 않음.
 - 현재 플로리다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는 관할주 소재 보험회사가 해외재보험회사에 게 출재할 경우 해당거래가 재보험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외재보험회사로 하여 금 수재위험의 100%에 해당하는 담보를 설정하도록 요구함.

나. 재보험관련 시행예정법

- □ 2010년 7월 21일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도드-프랭크법은 주간 재보험규제 차이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할 목적으로 제안된 재보험개혁법을 포함함.
 - o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은 오바마 행정부의 금융개혁 의지를 집대성한 방대한 법안으로서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산업, 금융시장, 금융감독 등을 전반적으로 개혁하는 내용의 금융개혁법임.
 - o 동법은 2010년 7월 21일 통과되었으며 2011년 7월 21일부터 효력을 가짐.
 - o 도드-프랭크법에 포함된 재보험개혁법(Nonadmitted and Reinsurance Reform Act, 이하 NRRA라 칭함)은 재보험인정요건에 대해 원수사 소재주의 감독을, 재보험회사의 지급능력에 대해 재보험회사 소재주의 감독을 명시함.
- □ NRRA에 따르면 미국 소재 보험회사의 재보험거래에 대한 재보험인정여부는 동 보험회사 소재 주 감독당국 만이 결정할 수 있는데, 이는 해당주가 NAIC로부터 인정받았거나 또는 NAIC의 지급능력요건과 유사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만 유효함.
 - o 원수사 소재 적격 주 감독당국이 동 보험회사의 재보험거래에 대해 재보험으로 인정한 경우 타주감독당국이 이를 부정할 수 없음.
 - A주에 소재하고 B주에서 영업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재보험거래에 대한 인정여부는 B주가 아닌 A주 감독당국에 의해 결정됨.
 - 그러나 현재 각주에서 채택한 재보험인정요건법은 위의 경우 B주 감독당국에 재보험인정여부 결정권을 부여함.
 - o 즉, 동 법은 원수사가 소재하는 주의 재보험인정에 대한 법과 규제가 타주의 법과 규 제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음.





- o 동 법은 재보험회사가 소재하는 주의 재보험거래에 대한 법과 규제가 타주의 법과 규 제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것을 명시함.
- o 이에 따라 재보험회사는 소재 주 감독당국에 신고한 정보 외 추가재무정보를 타주감독 당국에 제공할 필요가 없음.
- □ 따라서 2011년 7월 NRRA이 발효되면 플로리다주 소재 보험회사가 인수한 타주의 위험을 FLOIR의 지시에 따라 담보설정 없이 해외재보험회사에 출재하는 것은 플로리다 주법의 적용을 받아 재보험으로 인정됨.
 - o NRRA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소재 보험회사는 미국내 어느 주에서 영업을 하던 플로리 다주의 재보험인정요건만 충족하면 재보험인정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다. NAIC 재보험인정요건법 개정안

- □ NAIC는 2009년 재보험인정요건에 대한 주간 차이와 이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고 해외 재보험회사에 대한 담보설정규제를 완화하고자 재보험규제현대화법(Reinsurnace Regulatory Modernization Act 2009, 이하 RRMA 2009라 칭함)을 국회에 제출함.
 - o RRMA 2009는 미국재보험회사 뿐 아니라 미국에서 영업중인 해외재보험회사도 단일 적격주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함으로써 재보험거래에 대한 주단위 규제를 고수하되, NAIC 회원간 재보험규제의 통일을 추구함.
 - o 동 개정안은 재보험감독심의회(Reinsurance Supervision Review Board, 이하 RSRB 라 칭함)라는 연방기구를 설립하여 동 기구로 하여금 각 주의 재보험규제체계를 평가하여 HS(Home State) 또는 POES(Port of Entry State) 감독당국으로서의 자격을 결정토록 하고 아울러 해외 감독당국의 규제시스템을 평가토록 함.
 - HS(Home State)감독당국은 미국재보험회사(National Reinsurer)의 재보험영업을 감독하며, POES(Port of Entry State)감독당국은 미국에서 영업 중인 해외재보험회 사(POE Reinsurer)를 감독함.
 - o 출재사 소재 주감독당국은 출재사의 위험전가 및 재보험위험 다변화를 평가하고 거래 상대방인 재보험회사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음.



- □ RRMA 2009는 미국재보험회사와 해외재보험회사 모두 신용등급에 근거하여 담보설정비율을 부과, 적용하되 미국재보험회사에 대해서는 보다 관대한 담보설정을 재보험인정요건으로 할 것을 제안함.
 - o 미국재보험회사는 신용등급이 4등급 또는 5등급일 경우만 담보설정이 필요한 반면 해 외재보험회사는 1등급일 경우에만 담보설정이 제외됨.
 - o S&P, Moody's, Fitch, A.M.Best 등 주요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재보험회사의 신용등 급에 따라 담보설정비율이 정해짐.

<표 1> RRMA 2009의 재보험회사 신용등급별 담보설정비율

구분	신용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수재위험 대비	자국재보험자	0%	0%	0%	75%	100%
담보금액의 비율	POE재보험자	0%	10%	20%	75%	100%
	A.M.Best	A++	A+	A, A-	B++, B+	B ~ F
신용평가기관별 신용등급구분	S&P	AAA	AA+ ~ AA-	A+, A, A-	BBB+~BBB-	BB+ ~ R
	Moody's	Aaa	Aa1~Aa3	A1~A3	Baa1~Baa3	Ba1~C

자료: NAIC, Reinsurnace Regulatory Modernization Act of 2009

- □ RRMA 2009는 단일 적격 주감독당국에 의한 통제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NRRA와 유사하지만 적용대상 및 규제내용 측면에서 NRRA보다 포괄적임.
 - o RRMA 2009는 자국재보험회사 뿐 아니라 해외재보험회사에 대해서도 단일 적격 주감 독당국에 의한 통제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NRRA보다 포괄적임.
 - o RRMA 2009는 RSRB가 단일 적격 주감독당국을 결정하도록 한 반면 NRRA는 재보험회사 소재 주감독당국을 단일 적격 주감독당국으로 함.
 - o RRMA 2009는 해외재보험회사에 적용된 담보요건에 대한 개선안을 포함함.
- □ RRMA 2009는 의회의 지지를 얻는데 실패하였지만, NRRA가 통과됨으로써 각 주감독당 국이 해당주 소재 보험회사를 위해 RRMF 2009를 개별적으로 채택하는 것이 수월하게 되었음³⁾.

³⁾ Willkie Farr and Gallagher LLP, "Insurance industry implications of the Dodd-Frank Act", August 2010.



- o NAIC는 NRRA 2009를 통해 단일 적격 주감독당국에 의한 통제를 주장하였으나, 이를 실행하는데 현실적인 한계를 인식하였음⁴⁾.
 - 이를 테면 상대적으로 보험시장의 규모가 큰 캘리포니아 주감독당국으로 하여금 해당 주에서 영업중인 보험회사의 재보험거래에 대한 감독권을 타주감독당국에 양도하도록 유인 또는 강제할 수단이나 논리가 없음.
 - 또한 RSRB가 재보험회사에 대한 감독을 수행할 주를 결정한다는 것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o 그러나 단일 적격 주감독당국에 의한 통제가 연방법인 NRRA에 의해 요구됨으로써 NAIC는 이에 대해 더 이상 우려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뿐 아니라 각 주감독당국은 RRMA 2009의 담보설정에 대한 제안을 보다 수월하게 채택할 수 있게 됨.
- o 따라서 해외재보험회사에 적용된 담보규제에 대해 각 주감독당국이 향후 어떠한 입장을 취할지를 주시할 필요가 있음.

3. 담보규제에 대한 쟁점

□ 단일 적격 주감독당국에 의한 통제를 명시한 NRRA가 통과됨에 따라 주간 규제차이로 인한 비효율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나 해외재보험회사에 적용된 담보규제에 대한 개혁은 주감독당국의 결정에 달려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하에서는 담보규제 관련 쟁점사항을 살펴보기로 함.

가. 효율성 이슈

- □ 담보규제는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담보력(capacity)을 감소시키는데, NAIC에 따르면 담보규제가 폐지될 경우 전세계적으로 담보력이 20억 달러 또는 1.3%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⁵.
 - o 현재 플로리다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영업중인 해외재보험회사는 수재위험의 100%를 담보로 설정해야하기 때문에 재보험회사의 수재능력이 줄어듬.
 - 미국 보험회사의 해외재보험회사에의 출재율이 50%를 상회하고 있으며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감안하면 담보규제로 인한 해외재보험회사의 담보력 및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이 증가함.

⁵⁾ Arnold, Gregory, "The Impact of Optimal Federal Charter: On the Reinsurance Collateral Debate-The Latest Red Herring," 2009.



⁴⁾ 상세는 Mirel, Lawrence, "The Dilemma Faced by the NAIC" August 26, 2009 참조

- o 또한 담보규제는 해외재보험자의 투자 전략 및 포트폴리오를 유동성이 높은 자산에 집 중하도록 함으로써 재보험자의 투자수익을 감소시키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가용담보력 감소를 초래하는데, 이는 재보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미국입장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임.
 - 미국의 경우 재보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9.11테러시 손실의 약 60%를 재보험 회사가 보상하는 등 미국에서 대규모 재해로 인한 손실발생시 재보험이 중요한 역할을 함.

<표 2> 미국 보험회사의 해외재보험회사에 대한 의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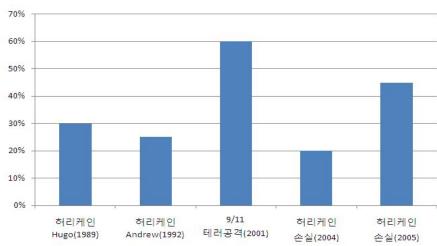
회계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5	2006	2007
해외재보험회사에의 출재율	40.5%	44.3%	45.2%	48.0%	45.8%	51.8%	53.1%	56.3%

주: 1) 해외재보험회사 출재율 = (해외재보험회사에의 출재보험료/미국보험회사의 출재보험료)*100

2) FY2003과 FY2004는 유효하지 않음.

자료: Reinsurance Association America, Offshore Reinsurance in US Market 2007.

<그림 1> 재보험의 재해손실보상비율



자료: Cooke, John and Skipper, Harold, "An Evaluation of US Insurance Regulation in a Competitive World Insurance Market" 2008.

- □ 마지막으로, 해외재보험회사가 담보설정 요구를 따름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재보험료 인상을 통해 미국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에게 전가됨.
 - o 뉴욕주 감독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해외재보험회사가 수재를 위해 미국에 예치한 담보 금액은 1.2억 달러로 추정되며 거래비용으로 연간 5억 달러를 지불함⁶⁾.



나. 무역이슈

- □ 미국의 담보규제는 자국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를 지급불능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내 보유위험의 해외유출을 막는 장치로 작용하고 해외 재보험회사의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보호무역주의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 왔음.
 - o 현 재보험인정요건은 수재사의 신용등급, 수재사 소재 감독당국의 규제강도, 재재보험 가입여부 또는 과거 지급이행경력 등에 상관없이 총수재위험의 100%에 대해 담보를 설정해야 함.
 - o 반면 미국 소재 재보험회사는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라도 담보설정이 요구되지 않음.
- □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이하, GATS)은 내국민대우를 명시하나 이는 자동적인 구속 요건이 아니라 WTO회원국에 협상권리를 부여하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음.
 - o GATS는 정부가 구매하거나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 교역을 규율하는 협정으로 1995년 발표되었으며 WTO 협정의 일부임.
 - o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는 각 체약국이 자국의 유사한 서비스 및 서비스공급 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는 대우를 다른 체약국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o GATS의 경우 내국민대우는 회원국의 일반적인 의무로서가 아니라 구체적 약속 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으며 각 회원국은 자국의 양허표에 기재된 분야에 있어 양허표에 명시된 조건 및 제한에 따라 내국민대우를 부여함.
- □ 또한 GATS는 금융서비스 협상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어 건전성 기준에 의거한 시장제한 적 조치를 인정함.
 - o GATS는 각 회원국이 국내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각국 내 서비스 공급자를 규제하고 또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음.
 - o 이러한 제한 조치는 한 국가의 금융시스템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보장한다는 이 유에서 가능하게 됨.
 - o 이러한 맥락에서 GATS는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주는 국내규제 집행은 합리적이고 객관적 이며 공평해야하며(제6.1조) 국내규제 중 특히 자격요건 및 취득절차, 기술표준, 인허가요 건과 관련된 조치가 불필요한 무역장벽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제6.4조).

⁶⁾ New York State Insurance Department, Press Release: "New York Modernizes Regulation on Reinsurance Collateral," 2007.



□ 그러나	불필요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는	건전성	제한조치에	대해서는	WTO	분쟁기	구에
제소할	수 있음.								

- o 건전성 규제는 일반적으로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장 정보와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측면에서 존재하나 GATS에서 인정되고 있는 건전성 예외 조항 (prudential carve-out)은 협상의 기본 원칙을 위배하는 측면에서 악용될 소지를 지니고 있음.
 - 즉 외국기관의 국내 사업 허가 또는 차별적인 적정 자본 비율 선정 등 차별적 인 조치들이 건전성 규제 조항으로 인정되어 자본최혜국 대우 또는 내국민 대 우에 반하는 차별적 조치로 시행될 수 있다는 것임.
- o 다만, 실질적으로 시장 제한 조치와 건전성 제한 조치의 구별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 □ 한편 EU회원국은 비회원국과 역내에서 재보험거래를 할 경우 비회원국이 소재국에서 적용하는 규제를 적용하는 상호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보복조치의 여지를 둠⁷⁾.
 - o EU재보험지침 2005(EU Reinsurance Directive 2005)에 의거하여 EU는 회원국간 담보규제를 폐지함.
 - o 상호주의란 상대국의 시장개방 정도에 맞추어서 자국의 시장개방을 결정하려는 입장을 의미함.
 - o 이러한 상호주의원칙에 따르면 미국감독당국이 미국위험을 수재하는 EU회원국 소재 재보험회사에 담보설정을 요구할 경우 EU감독당국도 미국 소재 재보험회사가 EU위험 을 수재할 경우 유사한 규제를 적용할 수 있음.

4. 시사적

□ 미국의 재보험규제 개혁 및 논의의 전개방향은 우리에게 재보험회사의 지급책임 이행능력 및 재보험금 회수 제고를 유도하는 재보험규제가 필요하며 이러한 규제는 건전성감독 목적에 충실하되 해외재보험회사에 대한 차별적 시장진입제한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함.

⁷⁾ Cooke, John and Skipper, Harold, "An Evaluation of US Insurance Regulation in a Competitive World Insurance Market", 2008.



- o 최근 미국에서는 해외재보험회사에 적용된 무조건적이고 차별적인 담보설정제도를 건 전성 제고라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한 동시에 시장진입 제한을 최소화할 있도록 완화하 려는 움직임이 있음.
 - 현재 플로리다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는 해외재보험회사로 하여금 수재위험의 100%를 담보로 설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해외재보험회사의 신용등급별로 담보설정비율을 차등화하는 안이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음.
- o 우리나라의 경우 재보험자유화 정책에 따라 1997년 국내우선출재제도와 같은 해외재 보험회사에 대한 진입장벽을 제거하였으며 이후 재보험에 대한 감독사각지대 발생으로 각종 재보험사고에 노출되었음.
- □ 지난 5월부터 시행된 적격 재보험회사 리스팅 제도는 이러한 취지에 가장 부합한 제도 중하나로서 적격 재보험회사 리스트를 보험회사에 제공하고 보험회사가 해당 재보험회사와 계약할 경우 책임준비금 적립 면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적격 재보험회사와의 거래를 유도하고 부실 출재를 방지함.
 - o 적격 재보험회사 리스팅 제도는 법규상 적격성 요건을 갖춘, 즉 신용평가 투자적격 또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한 재보험회사 리스트를 보험회사에 제공함.
 - 신용등급이 S&P BBB-, AM Best B+ 이상이면 투자적격 재보험회사로 분류되면, 미국RBC, EU Solvency 100% 이상이면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재보험회사로 분류됨.
 - 2010년 10월 기준 539개사가 투자적격, 49개사가 소재국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여 총 586개사가 재보험회사 리스트에 등록 중임.⁸⁾
 - o 거래상대방인 재보험회사의 신용등급이 S&P BBB-, AM Best B+이면 구체적인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책임준비금의 100%를 면제해줌.
- □ 그러나 현행 재보험회사 리스팅 제도의 책임준비금 100%면제 기준이 국내 보험회사의 부실출재를 최소화하고 재보험금 회수를 극대화하는지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음.
 - o 현행 제도하에서는 거래상대방인 재보험회사의 신용등급이 S&P BBB-, AM Best B+이면 구체적인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책임준비금의 100%를 면제해주기 때문에 국내보험회사가 보다 높은 신용등급을 가진 재보험회사에 출재할 유인이 크지 않음⁹.

⁹⁾ 한국보험신문, "금감원, 적격 재보험회사 리스팅제 시행" 2010. 05. 31.



⁸⁾ 보험개발원 보도자료, "해외재보험회사의 신용정보는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2010. 10. 14.

o 거래상대방인 재보험회사의 신용등급이 S&P BBB-, A.M. Best B+이면 우리나라에서는 책임준비금의 100%가 면제되지만, 미국 플로리다주에서는 재보험회사가 수재위험의 75%에 해당하는 담보를 설정해야만이 책임준비금의 100%가 면제됨.
□ 재보험회사의 시장진입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책임준비금이 100%면제되는 재보험회사의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하거나, 신용등급별로 책임준비금을 조건부로 100% 면제함으로써 재보험회사 리스팅 제도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o 상술한 바와 같이 GATS는 금융서비스 협상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어 건전성 기준에 의 거한 시장제한적 조치를 인정함. KiRi

